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작업안전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방법,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유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등

■ 법률에서 작업환경측정 신뢰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위임한 평가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 제97조의 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2조의 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유해인자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공정설비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7조의 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97조의 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  
 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  
 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  
 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의 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조정

- 현행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 없는 불필요한 검사항목이 일부 있고, 해당 유해  
 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기에는 미흡한 문  
 제점이 있다.
- 유해인자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  
 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의 세부 검사항목을 조정한다.
- 유해인자로 인하여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근로자  
 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⑤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  
 하며, 각 세부검사 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⑦ 제5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병력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현재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결과를 사업주에게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  
 하고, 사업주에게는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자에 대  
 한 건강진단 결과 및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도록 한다.

-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  
 써 개인의 병력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05조(건강진단결과와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  
 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  
 강진단이 특수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  
 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  
 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 기관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  
 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  
 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  
 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 표에 따라 근로  
 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23조 제  
 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  
 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  
 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  
 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3조(건강진단)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  
 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  
 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4.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 및 지원의 환수와 제한

-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고, 환수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주가 보조·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보조·지원을 제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시설·설비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1년간 제한하되, 이를 2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간 제한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지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조·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43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 제2항 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3년
2. 법 제6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1년
3. 법 제6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2년

##### 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

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규정(예규 제500호, 2004. 2. 21)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기타 개정사항

##### ■ 노·사협의체 협의 사항 신설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 제5항 및 제

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0.1톤 이상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검사대상 포함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그 외의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보고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사항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해 개정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

